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2. 12. 3.(월), 15:00
- 장 소 : 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박강철(위원장), 고부자, 김경표, 김명자,
김용수, 이해준, 장헌덕, 정명섭(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2	경주 양동마을 입구 종합안내판 설치	공개
3	고성 왕곡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4	아산 외암마을 입구 지주식안내판 설치	공개
5	아산 외암마을 주변 산지 약용식물 재배단지 조성	공개
6	청원 이항희가옥(중민 133)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7	제원 정원태가옥(중민 148) 주변 마을회관 신축	공개
8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중민 196)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9	영광 연안김씨 종택(중민 234) 주변 농로포장	공개
10	경산 상옛집(중민 266) 및 관련문서 전시관 및 화장실 건립	공개
11	부안 서문안당산(중민 18)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공개
12	중요민속문화재 국외 반출	공개
13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중민 272)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공개
14	안동 하회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공개
15	제주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공개
16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공개

【검토사항】

20	영주 괴현고택 이건예정지 검토 보고	공개
21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공개

【보고사항】

22	2012년도 민속마을 마을장인 추가지정 보고	공개
23	중요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 처리보고	공개

심 의 사 항

1.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도청 이전지 내에 위치한 고택을 신청지로 이건·복원하여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제안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452번지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구조 : 한식목구조(와가), 3동
 - 이건 복원 내용 : 총 124.75㎡
 - '가'동(86.34㎡, 본채) : 내부시설 보수, 전기시설 정비
 - '나'동(20.70㎡, 대문채) : 전기시설 정비
 - '다'동(17.71㎡, 곳간채) : 전기시설 정비
 - 기타 : 가옥 토석담장 설치 : 87m
 - 대상문화재의 관계 : 지정구역

라. 검토의견

- 신축예정지는 강 건너 위치하고 있으나 하회마을에서 직접 조망되는 곳으로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2012.11.26.)

- 신청예정지는 문화재 지정구역내로 하회마을에서 바라보이는 안산쪽의 시각선상에 놓이므로 고유한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2) 안동시 의견

- 중민 제122호 하회마을 보호구역 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건으로 기존 건물이 존재하던 풍천면 갈전리 138번지는 현재 경북도청 이전예정지로 신청사가 건립 중에 있으며 신청건물은 해체되어 보관중인 상태임. 기존건물은 1930년대 지어진 한옥 건물로 현 위치로 이건 신축하여 보존하고자 함으로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2. 경주 양동마을 입구 종합안내판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입구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동마을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관광·지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입구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700-6(양동문화관 입구)
- (4) 신청내용 : 종합안내판 설치
 - 크기 : 1.2m × 0.15m × 1.9m
 - 위치
 - 1안 : 양동문화관 주차장 쪽 입구 앞
 - 2안 : 양동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양동문화관 측면 출구 앞
 - 대상문화재의 관계 : 1안(1구역, 5m 이격), 2안(지정구역)

라. 검토의견

-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여행정보를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종합안내판의 설치 필요하며, 동 사항의 위치 및 형태 등은 '민속마을 공공디자인 개발('11.11, 활용정책과)' 가이드라인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신청된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는 형식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경주시 자문의견(문화재위원 ○○○ / 2012.11. 9.)]

- 위 치 : 관람객의 보행 동선이 모여지고 관람의 시작점이 되는 1안의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내 용 : 기존 마을회관 앞의 안내판과 중복되지 않게 양동마을과 함께 주변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 네트워크 안내판으로 함
- 형태 및 색상 : 문화재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바. 의결사항

- 가결(제1안)

3. 고성 왕곡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도 고성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고성 왕곡마을 주변에 주거를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일원
- (3) 신청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697외 1
- (4) 신청내용 : 고성 왕곡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 : 72.5㎡
 - 구조 : 한옥구조(1동), 건축높이 : 6.3m
 - 용도 : 단독주택
 - 대상문화재의 관계 : 2구역(이격거리 : 490m)

라. 검토의견

- 신축예정지는 문화재지정구역 외곽으로부터 약 490m 이격된 지점으로 능선 아래의 계곡지역에 위치하여 왕곡마을 및 주변 송지호와 적동마을에서도 조망되지 않으나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신축예정지 앞에는 임도가 놓여있음)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2012.11.22.)]

- 신청행위는 왕곡마을 보호구역 경계에서 490m 떨어진 곳에서 행해지는 단독주택 신축사업으로 신청부지의 특성상 왕곡마을로부터 직접 조망되지 않으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신청부지는 현재 마을 내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는 곳이지만 마을의 형국 내에 속한 곳으로 마을 내 조망처인 문암골 정상에서 100m 정도의 거리로 직접 조망되므로 2차 정비계획에 따라 마을의 영역을 형국전체로 확대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됨
- 신청부지 앞과 주변으로 도랑이 형성되어 있어 주거지로 부적합하며 진입로가 없어 사업시행 시 주변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됨. 특히 주변에 산재된 암석은 히토류가 함유된 암석으로 문화재 지정이후 반출된 예가 없음

(2) 고성군 의견

- 본 신청지는 왕곡마을 문화재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490m 이격된 위치이며 왕곡마을과는 낮은 산으로 가로막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문화재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단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원지형 보존)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임

바. 의결사항

- 보류
- 소위원회 구성하여 현지조사에서 결정

4. 아산 외암마을 주변 지주식 안내판 설치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지주식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외암마을 입구에 지주식 안내판을 설치하여 마을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시각적인 안내 및 홍보역할을 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183-3
- (4) 신청내용 : 지주식 안내판 설치
 - 규모 : 1.5m × 0.5m × 8m
 - 대상문화재의 관계 : 2구역(이격거리 : 180m)

라. 검토의견

- 현재 외암마을로 가는 지방도에는 다수의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어 외암마을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설치 당위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아산시 의견)

- 아산 외암마을 2구역(7.5m(1층이하) / 초가, 한옥, 절충한옥 등)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8m 높이의 지주식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주변은 현재 논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산 외암마을 저잣거리 주차장 내에 지주식 안내판을 설치하여 아산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를 홍보하려는 목적임. 민속마을 공공디자인 개발(2011.11 문화재청)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창살문양의 지주식 안내판을 설치하여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마을 경관 저해

5. 아산 외암마을 주변 산지 약용식물 재배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산지 약용식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외암마을 인근 산지에 산양삼과 율나무를 재배하기 위하여 약 2ha 면적에 숲아베기 등을 통한 약용식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1-1 일부
- (4) 신청내용 : 산지 약용식물 재배단지 조성
 - 임야(2ha)의 임목 약231본을 표고자목용 숲아베기(산양삼, 율나무 재배)
 - ※ 26평당 1그루 숲아베기(2ha=6,050평, 231본)
 - 경계용 헨스(능형망) 설치 : H 1.5m, L 1,000m
 - 기타 : 감시카메라, 전기가설, 양수기 등
 - 대상문화재의 관계 : 1구역(이격거리 : 200m)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숲아베기를 통하여 약용식물을 재배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사업 예정지는 외암마을로부터 조망되지 않는 주변 산이며 숲아베기 후 그 구역에 율나무와 산양삼 등을 식재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이행되므로 문화재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 신청지역에 율나무 2년생 1,000주와 산양삼 종자 1말을 식재 예정임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2.11.19)]

- 사업예정지는 마을에서 조망되지 않는 곳이지만 마을의 중요한 배후경관을 이루고 있는 풍수형국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산줄기로 1구역(원지형보존) 일 뿐 아니라 사업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자연생태환경 변화와 향후 유사사업의 신청 등이 우려되므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아산시 의견

- 아산 외암마을 1구역(원지형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표고자목용 숲아베기, 산양산삼 및 옷나무재배를 위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으로 주변은 현재 임야지역이며 외암마을 배산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숲아베기는 필요하나, 표고자목용 숲아베기 사업을 시행할 시 임야의 훼손으로 인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무분별한 벌채가 있으면 안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자연경관 훼손

6. 청원 이항희가옥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청원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원 이항희가옥」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청원 이항희가옥」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 2구역 : 평지붕 5m(1층), 경사지붕 7.5m(1층)이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원 이항희가옥」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190-1
- (3) 신청위치 :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325, 325-1(이격거리 : 362m)
- (4)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스텐문틀 제조) 신축
 - 대지면적 : 2,387㎡
 - 건축 / 연면적 : 462㎡
 - 건폐율 / 용적율 : 19.35%
 - 건물층수 및 높이 : 1층, 10m
 - 구조 : 철골조 판넬마감

라. 검토의견

- 당해문화재와 사업예정지가 36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나, 비교적 규모가 큰 근린생활시설(제조업)로 현지조사 후 허가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마. 참고사항(청원군 의견)

- 문화재로부터 남서가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 경관보호를 위한 보완시설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보류
 - 소위원회 구성하여 현지조사에서 결정

7. 제원 정원태가옥 주변 마을회관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8호 「제원 정원태가옥」 주변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제원 정원태가옥」 주변 마을회관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3구역으로 용도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 3구역 : 경사지붕 7.5m(1층) 이하 주거 및 농업용 참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8호 「제원 정원태가옥」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621
- (3) 신청위치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645-5 외 4필지(이격거리 : 384m)
- (4) 신청내용 : 마을회관 신축
 - 대지면적 : 5,075m²
 - 건축 / 연면적 : 411,89m² / 396,39m²
 - 건폐율 / 용적율 : 8.12% / 7.81%
 - 건물층수 및 높이 : 1층, 7.5m(경사지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황토벽돌마감, 기와잇기

라. 검토의견

- 사업예정지는 당해 문화재로부터 약 384m 이격되어 있으며 사업예정지와 문화재 사이에 야산이 있어 직접 조망되지 않아 문화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마을회관 신축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주거 및 농업용 시설만 가능 지역) 상에서 용도면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임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허가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지붕 색상은 명채도가 낮은 회색 또는 밤갈색 계통으로 하고 대지 내에 적절한 경관 식재를 하도록 함

마. 참고사항(제천시 의견)

- 사업 대상지는 당해 문화재와 384m 떨어진 제3구역(경사지붕 7.5m 이하의 1층,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지역이나, 임야로 차단되어 있어 식별이 불가함
-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 발전 도모의 일환으로 마을회관 및 운동 시설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 따라서, 원형보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기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지붕 색상은 명채도가 낮은 회색 또는 밤색계통으로 하고, 단지 내 경관 식재를 하도록 함

8.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96호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96호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해위길 52번길 29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5-4(이격거리 : 30m)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676m²
 - 건축 / 연면적 : 99m²
 - 건폐율 / 용적율 : 14.65%
 - 건물층수 및 높이 : 1층, 6.2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황토벽돌 치장쌓기, 한식기와잇기

라. 검토의견

- 사업예정지는 당해 문화재와 30m정도 이격되어 인접하나, 사업예정지와 문화재 사이에 기존 단독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에서 직접 조망되지는 않음
- 단, 문화재 외곽에서의 조망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신축예정 단독주택이 뒤편의 기존 주택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2012.11.19.)

- 신축 예정지는 당해 문화재 뒤쪽의 1구역(원지형 보존)이나 옛 집터에 1층 단독주택을 한옥과 조화를 이루는 형식으로 건립하므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단, 외관의 색채는 명채도가 낮은 색상(지붕 : 진회색(한식기와))으로 하며, 높이는 뒤편 기존 주택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게 하도록 함
- 당해 문화재와 건립 주택의 대지 종단면도 첨부하도록 함

(2) 아산시 의견

- 윤보선전대통령생가 1구역(정비계획대상지)에서 이루어지는 단독주택 신축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주변은 1층 위주의 민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번에 신청하는 건물은 한옥 형태로 1층 / 6.2m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높이는 기존 뒤편 주택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관은 명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함

9. 영광 연안김씨 종택 주변 농로 포장

가. 제안사항

전남 영광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연안김씨 종택」 주변에 농로를 포장을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영광 연안김씨 종택」 주변 농로 포장이 문화재 주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연안김씨 종택」
 - 소재지 :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166
- (3) 신청위치 :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166(문화재보호구역 외곽 농로)
- (4) 신청내용 : 농로 포장
 - 콘크리트포장 : B=3m, L=213m
 - 기존벤치플림관상부 복개 : B=0.9, L=15m

라.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영광 연안김씨 종택 문화재보호구역에 접한 비포장 농로를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것은 당해 문화재와 조화롭지 못하다고 판단됨
- 또한, 호지집 앞에 기존 도로를 우회하여 호지집 뒤로 도로를 신설하여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 포장 재료는 문화재 전경과 어울리는 재질로 변경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2.11.26.)

- 연안김씨 종택 주변의 농로 포장의 건은 다음 내용을 보완하여 설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 설계에 제시된 길의 원형과 관련된 지적도 같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길의 선형을 결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길의 선형은 반드시 원형이어야 하며 길의 정비는 이용상 불편이 없도록 보수·복원되어야 한다.
 - 특히 보수설계는 인접된 담장과 안전 및 시각적 경관관계를 고려하고, 길의 선형은 종택의 영역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재료 역시 고유한 옛 길의 경관에 조화로운 관계를 살펴 선정하고, 생활의 편의와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영광군 의견

- 금번 공사는 연안김씨종택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농로길 포장 공사를 실시로 인근 주민의 농업환경개선 및 배수로 공사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의견을 보완 후 시행

10.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전시관 및 화장실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경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주변 전시관 신축 및 화장실 건립에 대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경산 상엿집 옆 전시관 및 화장실 신축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 상엿집은 2012년 문화재 국고보조 보수정비사업으로 이건(원 위치에서 약 15m 이동) 정비 중에 있으며, 동 사업 완료 후 지정구역 변경 예정임
 - ※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보존지역)으로, '12. 10월 5차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으로 계획 수정 후 다시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번지
- (3) 신청위치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 35, 36번지
- (4) 신청내용 : 경산 상엿집 전시관 건립공사
 - 전시관
 - 건축면적 : 64.80m² - 높이 : 5.6m
 - 층수 : 지상 1층 - 구조 : 목조 한식기와
 - 화장실
 - 건축면적 : 11.52m² - 높이 : 4.1m
 - 층수 : 지상 1층 - 구조 : 목조 한식기와
- (5) 사업비 : 3억원

라. 검토의견

- 현재 경산시 시립박물관에 보관중인 지정 관련문서(11건, 19점) 등 상여자료 전시를 위한 전시동 및 관람객용 화장실 건립 건으로,
- 건립 위치가 이건 정비 중에 있는 상여집 아래쪽 부지를 활용하고 있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조경 식재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마. 참고사항[검토 의견(문화재위원 ○○○, ○○○ / 2012.11.13.)]

- 전시관의 배치는 전면에 마당이 확보되고 당해 문화재 쪽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1안이 바람직하며, 화장실은 향후 주차장 예정구역의 적정 위치에 건립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전시관은 전시물 종류와 전시프로그램 등에 따라 규모와 설비 등의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함
- 상여집으로의 오름 계단은 유선형으로 하고 적절한 식재를 함
- 경역 내의 전체 배수계획을 수립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전시관 공간계획 및 조경계획을 관계전문가 자문 후 시행

11. 「부안 서문안 당산」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중요민속문화재 제18호 「부안 서문안 당산」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신청인은 부안 서문안 당산 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2구역 : 평지붕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경사지붕 최고높이 15m(3층) 이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호 「부안 서문안 당산」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03 일원
- (3) 신청위치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11-1(이격거리 : 100m)
- (4) 신청내용 : 다가구 주택 신축
 - 대지면적 : 447m²
 - 건축면적 / 연면적 : 215.27m² / 658.97m²
 - 층수 및 높이 : 5층, 14.75m(옥탑층 포함)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검토의견

- 다가구주택 신축 예정지는 기존에 건축된 4~5층 건물들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여 문화재에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2012.10.30.)

- 신청 건축지는 서문안 당산에서 볼 때 아래로(신청지 쪽)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당산의 주변은 건축군으로 에워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지 주변은 상가가 형성되어 4~5층 건축군이 기 형성되어 실제적인 문화재의 시각적 경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부안군 의견

- 부안 서문안 당산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되며, 문화재와 이격 거리는 약 100m이며, 주변에 이미 5층 건물과 4층 다가구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존 노후주택 철거 후 건물 4층, 옥탑층(최고높이 14.75m)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임

바. 의결사항

- 가결

12. 중요민속문화재 국외 반출

가. 제안사항

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 중인 중요민속문화재 제264호 「변수묘 출토유물」 중 2점에 대한 국외반출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 중인 중요민속문화재 제264호 「변수묘 출토유물」 중 2점의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64호 「변수묘 출토유물」 중 2점
(첩리 1점, 답호 1점) (목록 붙임)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 (3) 신청내용 : 국외반출 허가
 - 반출 목적 : 미국 폴게티 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동쪽을 바라보다 : 루벤스와 아시아의 만남』 특별전으로 인한 국외대여
 - 반출 대상 국가 : 미국(폴게티 박물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 반출 담당자 :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유물운송 및 전시)
 - 반출 대상문화재 : 총 2점
 - 중요민속문화재 제264호 「첩리」 1점
 - 중요민속문화재 제264호 「답호」 1점
 - 전시기간 : 2013년 3월 5일 ~ 6월 9일(97일)
 - 반출기간 : 2013년 2월 19일 ~ 6월 24일(127일)

라. 검토의견

- 금번 미국 폴게티 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동쪽을 바라보다 : 루벤스, 아시아와의 만남」 특별전은 우리 문화재의 해외 선양과 해당 국가와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청된 사항이며, 반출유물 수도 비교적 소규모로 운송 및 전시 시 대상문화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붙임] 반출 대상 문화재

<u>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u>		
①지 정 번 호	중요민속문화재 제264호	
②명 칭	변수 묘 출토 유물 (첩리)	
③수 량	1건 1점	
④규 격	품 61cm,길이 119cm,화장 122cm	
⑤보 관 장 소	국립민속박물관	
		
①지 정 번 호	중요민속문화재 제264호	
②명 칭	변수 묘 출토 유물 (답호)	
③수 량	1건 1점	
④규 격	품 63cm,길이 135cm,화장 46cm	
⑤보 관 장 소	국립민속박물관	
		

13.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2호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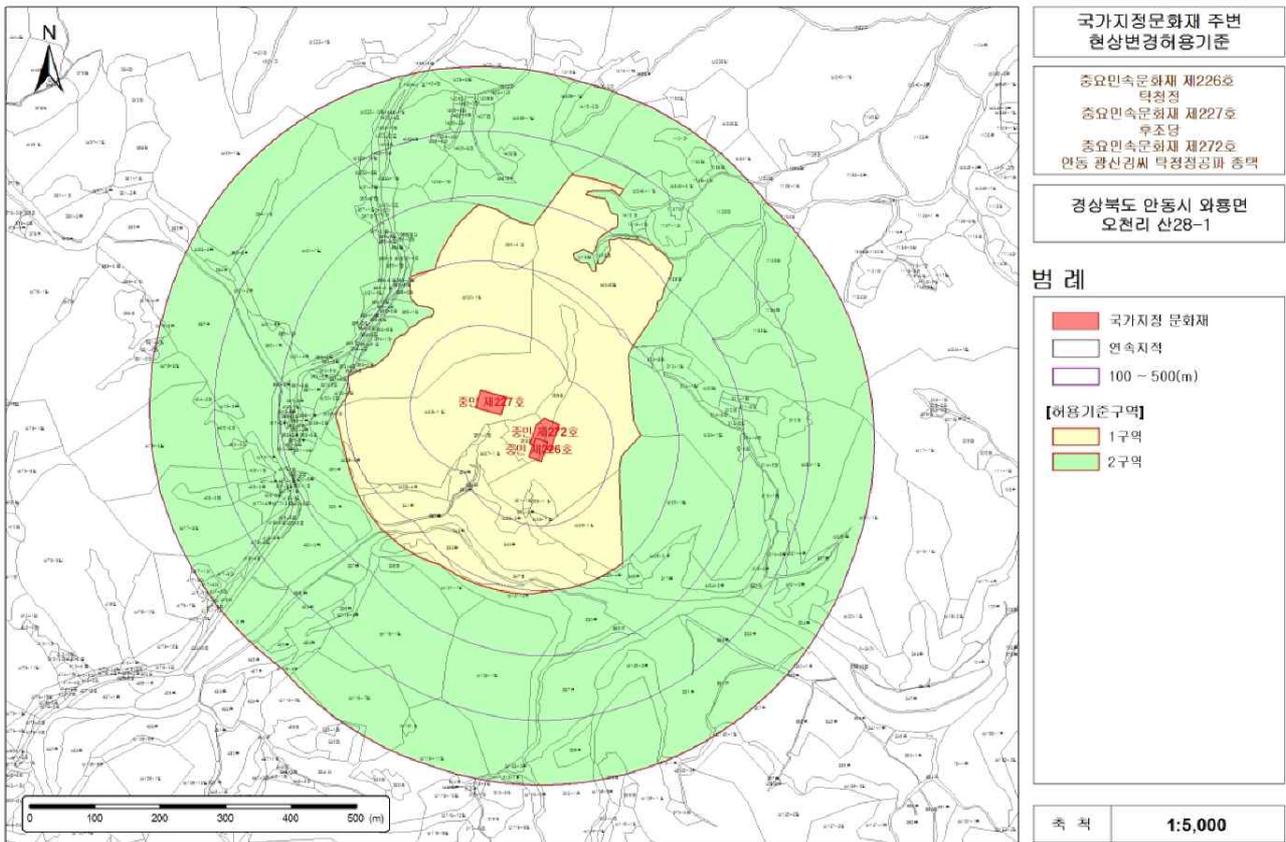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 주변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지역에 동 지역에 중민 제226호 「탁청정」 및 중민 제227호 「후조당」이 있어 기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72호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358 외
- (3) 제출내용 :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 보존지역		
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동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보수 허용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진회색, 밤색 등) ·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라. 검토의견

-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 주변에 중민 제226호 「탁청정」 및 중민 제227호 「후조당」이 위치하고 있어 기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 단, 1구역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보존지역을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함

14. 안동 하회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의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민속마을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존·관리 원칙을 증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 민속마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정비의 기준으로 삼고자 함
- 이에 따른 하회마을 종합정비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개별가옥 정비기준

- 원형의 고증 및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생활여건 개선정비. 마을의 건조물을 비롯한 마을 경관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 평면변형(일반사항, 확장, 증축), 입면변형(기단, 벽체, 창호, 지붕, 담장), 건축설비(현대식 화장실, 냉·난방설비) 등

※ 하회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2007),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2011) 준용

○ 복원계획

- 복원시점 : 1979년 하회마을 조사보고서와 1971년 항공사진을 기준점으로 설정
- 복원형태 : 고증을 통해 원형복원, 마을 공지의 멸실가옥 과거기록 검토 등

- 마을정비(안)
 - 마을 기반시설(마을길, 가로등·보안시설, 전기·통신·방송 시설, 소방·방재시설)
 - 마을 공동시설(마을회관 및 공동목욕탕, 공동창고 및 농기계 공동창고, 공동축사)
- 마을경관 정비 : 검암정사, 만송정 솔숲, 제방길, 놀이마당, 부용대, 나루터, 삼신당, 백사장·습지 정비 등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자문(문화재위원 ○○○, ○○○, ○○○, ○○○ / 2012. 10.~11.) 등을 거쳐 종합정비계획을 보완·수립한 것으로 세부시행사항은 문화재청의 설계검토 및 현상변경허가 등을 통하여 재검토하므로 동 계획의 시행은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5. 제주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민속마을」의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민속마을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존·관리 원칙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 민속마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정비의 기준으로 삼고자 함
- 이에 따른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가옥 정비

- 기존 가옥 보수정비는 퇴락 및 원형유지 정도에 따라 등급별 분류·정비
- 성안지역은 엄격한 원형보존차원에서 보수정비, 성밖지역은 가옥 외부는 전통양식(가옥 외벽, 지붕)을 복원토록 하고 내부는 주민생활편의를 고려함 (일부 개조 허용)

※ 디자인가이드라인(2007),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2011) 준용

○ 관아복원 및 정비

- 관아복원 : 관아부지 매입, 발굴조사, 일관헌 외 31개소 복원
- 학술조사연구 : 유적 원형 고증연구

○ 성곽 복원 및 정비

- 성곽정밀실측조사, 성곽보수, 성곽저촉부지 매입, 성상로 복원, 여장·옹성 복원, 동문루 복원, 방죽·사직단 정비

○ 마을기본시설 정비

-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마을내 탐방로 조성, 관리사무소 이전, 마을공동 시설 신축, 가로등 정비 등
- 성밖지역에 마을주민 공용주차장 조성, 성안으로의 차량진입을 통제하여 민속마을 경관유지, 마을 내 포장도로 재정비, 관리사무소 성외로 이전 등

○ 관광 편의시설 설치

- 공연장 건립 및 주변 정리, 안내소 및 강당, 매표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음수대, 안내판 등 설치, 활용프로그램 지원 등

○ 지정구역 내 가옥 도면 작성 등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자문(문화재위원 ○○○, ○○○, ○○○, ○○○, 전문위원 ○○○ / 2012. 10.~11.) 등을 거쳐 종합정비계획을 보완·수립한 것으로 세부시행 사항은 문화재청의 설계검토 및 현상변경허가 등을 통하여 재검토하므로 동 계획의 시행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16.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의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민속마을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존·관리 원칙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 민속마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정비의 기준으로 삼고자 함
- 이에 따른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보존관리계획
 - 마을 숲, 마을 주변의 전담, 돌담의 보존, 마을 길 보존, 수로의 기능 유지, 기타 전통경관 보존
- 복원계획
 - 서당복원, 장승의 위치 및 환경 복원, 옛(소멸) 가옥의 복원
- 정비계획
 - 마을입구 정비, 마을 역사관 건립,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주거 및 부속 시설물 정비, 조경시설 정비, 각 시설별 가이드라인, 탐방로 정비 등
- 활용계획
 - 역사문화경관 활용 : 외암 스토리 맵, 외암이야기길 트래킹, 외암 돌담 투어, 외암마을 스탬프렐리, 생활풍수교실, 보싸움 놀이, 바람동산 흙체험
 - 유물 활용 : 외암제례 프로그램, 마을역사관, 짚풀공예체험, 외암소달구지 투어, 외암마을 민박 농촌체험, 명사와 함께하는 외암한옥이야기, 서당 체험, 저잣거리 활성화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자문(문화재위원 ○○○, ○○○, ○○○ / 2012. 5.~11.)등을 거쳐 종합정비계획을 보완·수립한 것으로 세부시행사항은 문화재청의 설계 검토 및 현상변경허가 등을 통하여 재검토하므로 동 계획의 시행은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검 토 사 항

17. 영주 괴헌고택 이건예정지 검토 보고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고택」의 영주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이건대상지 선정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 영주다목적댐 건설에 따라 수몰예정지에 위치한 영주 괴헌고택의 이건위치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 괴헌고택 이건·실측·복원설계 등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부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10년 제8차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이에 우선 이건 위치에 대해 검토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고택」
 - 소재지 :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번지
- (3) 이전위치 :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 73번지 일원
 - 이건예정지는 전통문화체험 단지를 조성하여 이전하고, 동 단지 인근에는 수몰민 이주단지 2개소가 조성될 예정으로 소유자 동의는 완료된 상태임

라. 검토의견

- 괴헌고택 등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이전하기위해 조성하는 전통문화 체험단지의 예정지는 환경사 구릉지에 위치하고 남동향으로 일조 및 조망이 양호한 지형으로,
- 국도5호선 이설도로가 인접하고 인근에 집성촌 이주단지 조성 등 접근성 및 전통경관 보존이 양호하고, 소유자 동의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괴헌고택(전통 문화체험단지) 이전지로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

(1) 검토 의견(문화재위원 ○○○, ○○○ /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 용역보고회)

- 전통문화체험단지의 예정지는 지형특성상 성토와 절토가 필요하여 일부 경관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 대상지역의 변경이 불가하다면 현 예정지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2)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의견

- 전통문화체험단지 예정지에 대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하고 자연환경 및 접근성 등이 우수하므로 예정지로 선정함이 바람직함

※ 입지 분석

구 분	분 석 내 용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발 165~200m의 완사면 능선과 완경사 구릉지 ○약간의 암반과 사질토양 ○일조 및 조망은 남서/남동/동향으로 양호
접근성 및 문화재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서에서 북동으로 (구)국도5호선 이설도로가 공사중 ○대상지 배면에 진입도로 개설 예정으로 접근성 양호 ○외부와의 차단성이 강해 독립성이 강함 ○인근에 전통보존형 집성촌 이주단지가 계획중에 있어 문화재와 더불어 지역의 역사와 전통 보존이 가능
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치계획 수립에 있어 능선, 곡부를 활용한 다양한 배치와 지형에 따른 축선(주향)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 ○계단식 터 닻기를 통한 문화재간 간격 확보와 위계 설정이 가능
풍수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조가 뚜렷하고 앞쪽의 물길이 일자로 길게 흐름 ○단지를 감싸 안는 산이 좌우에 형성 ○전체적인 형상은 모래톱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지형

(3) 향후 이전 추진계획

-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계획 및 이건문화재 보존대책 연구용역('12. 11~'13. 03.)
- 문화재 세부배치계획 문화재위원회 검토('13. 02.)
- 문화재단지 설계용역 발주('13. 02.)
- 문화재 이건 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13. 04.)
- 단지조성 및 문화재 이건 공사('13. 04.~'14. 05.)

바. 의결사항

- 가결

18.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가. 제안사항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현상변경허가사항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이나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가 격월로 개최되어 안전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회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개선사유

- 신속한 민원 회신을 통한 문화재 행정의 신속성 및 신뢰성 향상
- 근대문화재과의 업무 효율성 제고

(2) 개선방안

- 현행 : 격월 개최(작수달 첫번째 월요일)
- 변경(안)
 - 제1안 : 매월 개최
 - 제2안 :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현상변경이 발생할 경우 문화재위원이 포함된 관계전문가 3인의 현지조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고 향후 문화재 위원회보고
 - 제3안 : 기타 건의사항

(3) 검토내용 : 위원회 운영 개선안 검토

라. 의결사항

- 가결(제2안)

보고 사항

19. 2012년도 민속마을 마을장인 추가지정 보고

가. 보고사항

민속마을의 전통문화 전승을 활성화하여 마을 본래적 가치인 진정성·완전성을 회복하고 효율적 전승체계를 구축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2011년부터 민속마을 주민 중에서 기·예능 보유자 등을 발굴, 마을장인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민속마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전 민속마을로 확대하여 전통문화 전승을 활성화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추진경과

- 민속마을 보존·관리 관계자 회의 ('12.3.12/5.15/9.27)
 - 각 마을별 마을장인 발굴 및 활용·지원사항 등 활성화 독려
- 2012년도 민속마을 마을장인 지정 추진계획 시행(3.26)
- 각 민속마을별 마을장인 발굴 및 검증, 대상자 선정(3~10월)
 - ※ 2011년도 마을장인 지정현황 : 하회마을 12개 종목 28명, 양동마을 2개 종목 13명

(2) 2012년 마을장인 지정 추진계획

- 지정주체 : 지자체 및 마을보존회
- 지정방향
 - 기 지정된 마을 : 지속적으로 종목 추가 발굴 및 활성화
 - 미 지정 마을 : 마을별 장인지정 잠재인력 파악 및 지정 추진

(3) 2012년 마을장인 지정 추진현황

- 마을장인 추가 발굴 : 하회마을, 양동마을

구분	분야	장인 수	지정 주체	비고
하회마을	신앙의례 / 민속놀이	6명	마을보존회	3개 종목
양동마을	초가장 / 전통의례 / 민속놀이 / 전통음식 / 전통공예	44명	마을보존회	10개 종목

- 마을장인 신규 지정 : 왕곡마을, 한개마을, 성읍민속마을

구 분	종 목	장인 수	지정 주체	비 고
왕곡마을	초가장 / 담장장	6명	마을보존회	2개 종목
한개마을	초가장 / 담장장 / 전통음식	11명	마을보존회	3개 종목
성읍마을	전통공예 / 전통음식	10명	마을보존회	2개 종목

※ 아산 외암마을은 마을장인에 대한 자료 기록화 중('12.12월), 13년도에 아산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 추진 예정

2012년 달라진 점

- ✓ 종목면에서는 기존 초가장, 담장장 등에서 전통의례/전통음식/전통공예/민속놀이 등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되었고,
- ✓ 장인 수에서도 마을 내 잠재인력의 추가 발굴을 통해 77명 증가되었음 ('11년 41명 → '12년 118명)

(4) 향후 추진계획

- 마을장인 지원 및 활용방안 지속 강구('13년)
 - 마을 보수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등
 - 체험프로그램 활용방안 강구
- 초가이영잇기 사업관련 전승방안 검토·협의('13년)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20. 중요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중요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성읍 민속마을 (중민188)	제주 서귀포시	○○○	[제주 성읍민속마을 주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설치] ○ 위치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55-3(지정구역) ○ 신청내용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설치 ○ 허가조건 : 형태, 재료, 색채 등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행	허가	'12.11. 5.
안동 하회마을 (중민122)	경북 안동시	○○○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안동시 남후면 하아리 323-5번지(1구역:500m이격) ○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구조 : 경량목조 · 최고높이 : 5.7m · 건축규모 : 지상1층, 109.85㎡ ※ 하회마을 3km, 병산서원 1.4km 이격	허가	'12.11. 5.
아산 외암마을 (중민236)	충남 아산시	○○○	[아산 외암마을 주변 농업용 관정개발] ○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47-2번지(1구역:150m이격) ○ 신청내용 : 농업용 관정개발 · 농업용모터 : 0.5마력, 1대 · 착정경 : 50mm, 심도 20m · 상부보호공(구조물) : 1개소(1m*1m*1m)	허가	'12.11. 9.
아산 외암마을 (중민236)	충남 아산시	○○○	[아산 외암마을 주변 농업용 관정개발] ○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11번지(1구역:310m이격) ○ 신청내용 : 농업용 관정개발 · 농업용모터 : 0.5마력, 1대 · 착정경 : 150mm, 심도 50m · 상부보호공(구조물) : 1개소(1m*1m*1m)	허가	'12.11. 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아산 외암마을 (중민236)	충남 아산시	○○○	[아산 외암마을 주변 농업용 관정개발] ○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33번지(1구역:220m이격) ○ 신청내용 : 농업용 관정개발 · 농업용모터 : 0.5마력, 1대 · 착정경 : 50mm, 심도 20m · 상부보호공(구조물) : 1개소(1m*1m*1m)	허가	'12.11. 9.
경주 양동마을 (중민189)	경북 경주시	○○○	[경주 양동마을 내 이동헌가옥 개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88번지(지정구역) ○ 신청내용 : 이동헌가옥 개축 · 규모 : 3칸×2칸, 44.81㎡(13.55평) · 양식 : 3량가, 민도리집 · 지붕 : 초가지붕	허가	'12.11.20.
구미 쌍암고택 (중민105)	경북 구미시	○○○	[구미 쌍암고택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현상 변경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320번지 2호 ○ 신청내용 · 1동 : 지상 1층 → 지하 1층 추가 · 연면적 : 341.1㎡ → 387.96㎡ (1동 79.86㎡ → 126.72㎡)	변경 허가	'12.11.20.
구미 쌍암고택 (중민105)	경북 구미시	○○○	[가옥 내 장독대 설치] ○ 신청내용 · 현 중문채 우측면에 접해있는 시멘트 블록 장독대를 철거 후, 우측 공지에 전통방식으로 설치	허가	'12.11.20.
논산 명재고택 (중민190)	충남 논산시	○○○	[생활기본시설 개보수 등] ○ 신청내용 · 안채 난방공사, 전기시설 보수 및 대문채 및 서재 화장실 보수 · 석축 및 정화조 설치 ○ 조건부 내용 : 신청안대로 시행하되 서재 앞 경사면 석축 및 계단은 최소범위로 설치	조건부 허가	'12.11.15.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